



# 월간 뉴스레터

Smart decisions. Lasting value.

2019년 3월호

## Contents

### 회계정보

- 기업의 외부감사 관련 부담 완화를 위한 감독지침 발표

### 세무 및 법률정보

- 2018 년도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 공포
- 최신 세우예규 · 판례

### 한울회계법인 업무소개

- 감사, 인증 및 관련 재무자문
- 세무신고/세무자문/세무불복
- 국제조세/이전가격
- 기업관리업무 서비스(BPO)
- 지역 및 관광개발컨설팅
- 전략/인사/리스크 /관리회계 /마케팅/신사업전략 등
- SOC 컨설팅
- 기업금융/구조조정/M&A/ Transaction Service

[한울회계법인은 매출액기준 업계 7 위 규모이며, Global Top 8 회계 네트워크의 하나인 Crowe Global 의 한국 Member Firm 입니다.]

한울회계법인의 뉴스레터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뉴스레터 관련 연락처]

#### ▶ 연락처

전화번호 : 02-316-6646(교환 316-6600) - 팩스번호 : 02-775-5885  
 이메일 주소 : [secretary@crowe.kr](mailto:secretary@crowe.kr)  
 Website : [www.crowe.kr](http://www.crowe.kr)

#### ▶ 사무실 위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3층, 5-8층, 10층 (우 : 06179)

ABAS 본부  
02 - 316 - 6621

회계정보 등

기업의 외부감사 관련  
부담 완화를 위한  
감독지침 발표

기업의 외부감사 관련 부담 완화를 위한 감독지침 발표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9.3. 12]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관련  
감독지침

1.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관련 감독지침

가. 배경

□ (제도) '18년부터 금융자산에 대한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9)이 시행됩니다.

○ 모든 지분상품(비상장주식 포함)의 공정가치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 ①최근의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②원가가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원가로 측정 가능

※ 종전 기준(IFRS 1039)에 비해 원가를 공정가치로 계상할 수 있는 범위가 축소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으나, 사실상 종전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견해도 병존

□ (현황)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가 시장에 안착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소규모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기업 (벤처캐피탈 등)의 경우 공정가치 평가에 따른 경영부담이 크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고,

- 외부감사 과정에서 공정가치 추정치에 대하여 기업과 외부감사인 간 의견조율이 어려운 실정

#### [현장의 목소리]

##### ▪ 가치평가의 한계

- 피투자회사가 사업초기단계로 계획된 매출이 아직 발생하지 않는 준비 단계인 경우이거나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경우(사모펀드 등)에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얻기 어려움

##### ▪ 외부감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 기업이 직접 평가하거나 외부용역을 의뢰하여 추정된 공정가치를 외부감사인이 합리적 이유없이 수용하지 않아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이 큰 상태

- 외부감사인은 감사위험을 고려하여 기업의 외부평가 결과에 대해 보수적으로 접근

##### ▪ 가치평가 인프라의 부족

- 가치평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관이 제한적(중대형 회계법인, 신평사 4 곳)이라 서비스 비용 부담이 크고 제때 평가결과를 받기 어려움

- 무형자산의 증가 등 경제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가치평가 방법에 대한 시장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

나. 감독지침

**[동 감독지침의 성격]**

- 국제회계기준의 합리적인 해석범위 내에서 감독업무의 구체적 지침을 마련, 이를 관련 업계와 공유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새로운 회계기준이나 기준 해석이 아님

- 회사는 개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동 지침과 달리 판단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음

□ 모든 지분상품(비상장주식 포함)은 공정가치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가가 공정가치의 적절한 추정치가 될 수 있습니다.

① 피투자회사의 경영 성과나 영업에 중요한 변동이 없는 경우로서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IFRS1109 B5.2.3~B5.2.5 참조)

가. 예산, 계획, 주요 일정과 비교해 볼 때 피투자자의 성과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

나. 피투자자가 이를 제품의 기술적 수준에 대한 예상이 변동한 경우

다. 피투자자의 지분이나 제품 또는 잠재 제품에 대한 시장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

라. 국제 경제나 피투자자의 경제적 영업 환경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

마. 비교 가능한 기업의 성과나 전반적인 시장에 내재된 가치평가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

바. 피투자자에게 부정, 상업분쟁, 소송, 경영진이나 전략의 변화와 같은 내부 문제가 있는 경우

사. 피투자 지분과 관련하여 제3자 간 지분상품의 이전이나 (새로운 주식의 발행과 같은) 피투자자가 외부와의 거래에 따른 증거가 있는 경우

아. 가~사의 상황 외에 성과와 영업에 중요한 변동이 있는 경우

② 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IFRS1109 B5.2.3~B5.2.5 참조)

- 기업규모, 자본조달방법(공모 또는 사모), 정보이용자 요구수준 등 고려 가능(IFRS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QC35~39 참조)

< 예시 >

- 초기 스타트업 등 가치평가에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등 국내외 비교사례를 찾기 어려운 경우

③ 투자규모 등이 재무제표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특정 보고기업의 재무정보에 근거한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한 것임

⇒ 기업은 ①~③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판단근거를 문서화해야 함

- 기업은 공정가치 평가 관련 사항을 충실하게 공시하여야 합니다.
  - 기업이 가치를 어떻게 측정했는지 정보이용자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평가기법, 투입변수 등 평가과정 및 그 한계, 추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확실성 등을 충분히 공시
    - 평가일과 결산일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일 이후 발생한 주요 변동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할 필요
  - 특히 공정가치를 원가보다 높게 평가하는 경우나 원가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판단근거를 구체적으로 공시
  
- 외부감사인은 공정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재무정보 작성자(기업)의 전문성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합니다.
  - 공정가치는 추정치를 확정할 수 없는 본질적 한계가 있으므로 평가 ‘과정’\* (Due Process)에 오류가 없다면 회계기준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 \* 평가방법 및 근거자료의 객관성, 중립성, 일관성, 외부용역의 전문성, 독립성 등
  - 외부감사인은 기업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되, 그 판단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를 점검
  - 합리적 근거없이 특정 추정치 또는 평가방법의 적용을 주장하거나 외부용역 발주를 기업에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행위로 간주

기업 경영진의  
회계부정에 대한  
대응 관련 법령해석

2. 기업 경영진의 회계부정에 대한 대응 관련 법령해석

가. 배경

- (제도) 외부감사인은 기업 경영진의 회계부정을 발견한 경우에 그 사실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여야 하며,
  - 내부감사기구는 통보받은 사실에 대해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증선위와 외부감사인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 §22)
  
- (현황) '18.11월 이후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므로 시장의 인식이 낮고,
  - 외부감사인이 기업 경영진의 회계부정에 대한 디지털포렌식(forensic) 조사를 요구하여 감사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사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 ① 기소되어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임에도 법 §22를 이유로 자체 조사를 요구
- ② 외부감사인이 회계부정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증거를 수집하기 보다는 기업에 회계부정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것을 요구

나. 감독지침 (법령해석 등)

- (외부감사인) 발견된 회계부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합니다.

\* (§22②)외부감사인은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발견하면 내부감사기구에 통보  
 ○ 이 경우 회계부정 관련 감사증거 및 재무제표 영향평가 자료 등을 기업에 제공하여 경영진의 자진시정을 우선적으로 유도 (회계감사기준서 240 참조)

□ (내부감사기구) 경영진의 조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경우에 외부감사인이 통보한 회계부정 건에 대하여 자체 조사를 실시합니다.

\* (§22③)내부감사기구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

○ 조사에 필요한 정보, 비용 등이 합리적인 수준인지\*에 대하여 경영진과 사전에 협의하고 관련 내용을 문서화

\* (예) 디지털포렌식 조사가 그 목적에 적합한지, 경영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등

○ ‘조사결과’ 및 이에 따른 ‘경영진의 시정조치 결과’를 즉시 증선위와 외부감사인에 제출

기업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외부감사인 개입  
 금지 관련 법령해석

3. 기업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외부감사인 개입 금지 관련 법령해석

가. 배경

□ (제도) 외부감사법(§6⑥)에서는 외부감사인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하거나 회계처리 자문 등에 응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취지: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외부감사인이 자신이 작성한 재무제표를 스스로 검증함에 따른 부실감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

□ (현황) 일부 외부감사인은 감사과정에서 동 규정을 이유로 해당 기업들에 과도한 수감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현장의 목소리]

① 감사 과정에서 기업에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으며,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음

② 재무제표에 회계기준 위반이 있는 경우에 판단근거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음

나. 감독지침 (법령해석)

□ 외부감사법 §6⑥은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직접적인’ 개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 외부감사인은 기업의 회계처리방식 등에 대하여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기업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 기업이 스스로 판단하거나 다른 기관에서 자문을 받은 내용에 대해 외부감사인이 구체적 견해를 제시하는 행위 등은 ‘자문’ 또는 ‘관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감사 관련 자료 요구나 회계기준 위반 지적과 관련하여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행위도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회계기준 위반 판단이 어렵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이 특정 입장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행위는 외부감사법(§6⑥) 위반 소지가 있음

세무자문본부  
02 - 316 - 6630

세무 및 법률정보 등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 공포

2018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 공포

□ 정부는 2019. 3. 20(수) 2018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였습니다. 공포된 내용 중 중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1) 해외 임상3상 위탁연구개발비를 신성장 연구개발비에 포함(조특칙 §7)

| 종 전  | 개 정  |
|--|--|
| <p>□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포함되는 위탁연구비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 출연연구기관에 위탁한 금액</li> <li>○ 국내 비영리법인, 기업연구기관(연구 전담부서), 연구개발서비스기업에 위탁한 금액</li> </ul> <p>- 단, 신약의 임상1·2상* 및 희귀의약품 임상비용은 해외 위탁 금액도 허용</p> <p>* (1상) 소수 건강한 사람 대상 안전성검사, (2상) 소수 환자 대상 유효성 검사</p> <p style="text-align: center;">&lt; 추 가 &gt;</p> | <p>□ 해외 위탁 가능한 연구개발비 범위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 동)</li> <li>○ (좌 동)</li> <li>- (좌 동)</li> </ul> <p>- 신약 임상3상* 해외 위탁비</p> <p>* 다수 환자 대상 약효, 장기적 안정성 등 종합적 검사</p> |

<개정이유>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생산성 향상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 (조특칙 §7)

| 종 전   | 개 정   |
|---|---|
| <p>□ 인력개발비의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근로자 대상 생산성향상 인력개발비 등</li> </ul> <p>- 품질관리·생산관리 등 자체·위탁훈련비</p> <p style="text-align: center;">&lt; 추 가 &gt;</p> | <p>□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근로자 대상 생산성향상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li> </ul> <p>- (좌 동)</p> <p>- SW관리·데이터관리·보안관리 자체·위탁훈련비</p> |

<개정이유> 서비스업 분야 인력개발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후관리 강화 (조특칙 §7)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세액공제 관련 검증자료 부재<br><br><p style="text-align: center;">&lt; 신 설 &gt;</p><br><br><p style="text-align: center;">&lt; 신 설 &gt;</p> | <input type="checkbox"/> 연구개발 활동 검증자료 작성·보관·제출 의무 강화<br><br><input type="checkbox"/> 연구계획서·보고서(전체 R&D), 연구노트(신성장R&D) 작성·보관*<br><br>* 부과제척기간을 고려하여 5년간 보관 의무화<br><br><input type="checkbox"/> R&D비용 세액공제 신청시 연구과제 총괄표 제출 |

<개정이유> 세액공제 대상 연구개발에 대한 관리 강화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4)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시설 추가·정비(조특칙 별표2, 별표4, 별표5의2, 별표8의3)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시설<br><input type="checkbox"/> 에너지절약시설<br>- 초고온 공랭식 년셀 캔드 모터 펌프, 압축공기제습장치, 스프링클 시스템,<br><p style="text-align: center;">&lt; 추 가 &gt;</p><br><input type="checkbox"/> 생산성향상시설<br>- 생산자동화시설, 생산자동화제어시설 등<br><p style="text-align: center;">&lt; 추 가 &gt;</p><br><input type="checkbox"/> 안전시설<br>- 소방시설 등<br>- 산업재해예방시설<br><br><p style="text-align: center;">&lt; 추 가 &gt;</p> · 잠금장치, 셋틀빠짐 방지장치 등<br>- 화학물질 안전관리시설<br><p style="text-align: center;">&lt; 추 가 &gt;</p> | <input type="checkbox"/> 대상시설 추가·정비<br><input type="checkbox"/> 실효성 낮은 설비 정비, 신성장산업 시설 추가<br>- (삭 제)<br><br>- 수소생산·압축·저장시설*<br>* 압축·저장시설은 수소 충전소 내에 설치되는 시설<br><br><input type="checkbox"/> 신성장산업 시설 및 물류 자동화시설 추가<br>- (좌 동)<br>- (신성장) OLED 디스플레이 생산시설, AI 구현 HW, 산업용 3D 프린터 등<br>- (물류) 무인반송차, 자동창고시스템 등<br><br><input type="checkbox"/> 대상시설 추가·정비<br>- (좌 동)<br>-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대상 설비로 대상시설 조정<br>* 안전기준 충족여부를 고용부(안전인증), 제조사 등(자율안전확인)이 평가하여 인증(「산업안전보건법」)<br>· 보일러 압력 방출용 안전밸브 등<br><p style="text-align: center;">&lt; 삭 제 &gt;</p><br><input type="checkbox"/> 대상시설 추가<br><input type="checkbox"/> 유해화학물질 처리시설*<br>* 유사시 유해화학물질을 기준농도 이하로 처리하여 배출하는 시설 |

<개정이유> 실효성이 낮은 시설을 정비하고, 신성장시설을 공제대상에 추가  
 <적용시기> (시설추가) 규칙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시설삭제) '20.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2.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1)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조정 (국기칙 §19의3)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br><br>○ 연 1.8%<br>*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결정 | <input type="checkbox"/> 이자율 조정<br><br>○ 연 1.8% → 2.1%(+0.3%p), |

※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한국은행, 연%) :  
('15) 1.81 ('16) 1.56 ('17) 1.66 ('18) 2.02 ('18.4/4) 2.13

<개정이유>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을 반영하여 조정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 분부터 적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3. 소득세법 시행규칙

(1)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 명확화 및 추가 (소득칙 §79)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주식 양도소득세 필요경비<br><br>○ 취득가액<br><br>○ 자본적 지출액 등<br>(예: 취득후 정송비용)<br><br>○ 양도비<br>-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br>-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br>- 증권거래세<br><br><신 설><br><br>* 신고서식에서 수수료, 농어촌특별세도 필요경비로 인정 | <input type="checkbox"/> 필요경비 대상 명확화 및 추가<br><br><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 margin: 10px 0;">(좌 동)</div><br><br>- 위탁매매수수료<br>- 일임수수료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위탁매매수수료 성격의 비용<br>• 온라인으로 직접 거래시 부과하는 위탁매매수수료 금액 이하<br>• 부과기준이 약관 등에 명시<br>- 농어촌특별세 |

<개정이유> 직접투자와의 형평성 제고 및 필요경비 범위 명확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4. 법인세법 시행규칙

(1) 적격 분할시 주식 승계 요건 합리화(법인칙 §41)

| 종 전  | 개 정  |
|--|--|
| <input type="checkbox"/> 적격 분할시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 아래의 경우만 주식 승계 가능<br><input type="checkbox"/> 분할신설법인의 사업 관련 주식*<br>* ·분할부문과 매출 or 매입 비중 30% 이상인 법인 주식<br>·분할부문과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주식 등<br><input type="checkbox"/> 지배 목적 주식*은 모두 승계(분할존속법인의 사업 관련 주식도 모두 승계)<br>* 지배주주로서 3년이상 보유 주식 | <input type="checkbox"/> 주식 승계 요건 합리화<br><br><input type="checkbox"/> (좌 등)<br><br><input type="checkbox"/> 지배 목적 주식이라도 분할존속법인의 사업 관련 주식은 승계하지 않을 수 있음 |

<개정이유> 분할존속법인의 원활한 사업 영위 지원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발생한 가격 담합행위로 인해 미국의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미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미국 법무부에 납부하는 손해배상금이 법인세법 제21조의2에 따른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14, 2019.03.20)

  -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발생한 가격 담합행위로 인해 미국의 관련 법률 [독점금지법(Sherman & Clayton Act), 부당이익 환수법(False Claims Act)]을 위반하여 미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미국 법무부에 납부하는 손해배상금이 「법인세법」 제21조의2에 따른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금은 같은 법 제93조 제10호 아목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같은 법 제3조 제4항(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쟁점리스크가 국조법 제28조에 의하여 조세조약상으로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국내세법상으로는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또는 제6호의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 제4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98조의4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8중0817, 2019.03.15)

  - 조세조약에서는 절차적 문제를 정하지 않고 있어 각 국가는 조세조약에 정한 제한을 적용하기 위해 국내법에 규정한 절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인바, 국내법에서는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으려면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고(「법인세법」 제98조의4 제1항), 이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 제6호)하도록 하는 절차규정을 둔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에서는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으로 제4호에서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사업소득) 및 제6호(인적용역소득)의 국내원천소득을, 제6호에서 「법인세법」 제98조의4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을, 제7호에서 원천징수세액이 000원 미만인 소득을 각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리스크가 국조법 제28조에 의하여 조세조약상으로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국내세법상으로는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사업소득) 또는 제6호(인적용역소득)의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 제4호(선박 등 임대소득)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98조의4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
  - 또한 위와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 제6호에서 “「법인세법」 제9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으로 규정한 사실로 볼 때,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사업소득)·제6호(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국내원천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음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 제7호가 아니라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가 적용되어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하여야 그 제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리스크를 지급하면서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 그 제출의무가 있다고 보아 법인세(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업 무 소 개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자문</li> <li>▪ 세무조정, 세무자문 및 Outsourcing</li> <li>▪ 외국/외투기업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경리, 급여, 총무, Corporate Secretarial Services)</li> <li>▪ 해외진출자문, 기업설립 및 청산자문</li> <li>▪ 국제조세, 이전가격 자문</li> <li>▪ 조직, 인사 전략 / HR</li> <li>▪ 전략수립 및 균형성과관리/평가 /BSC</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 지역 및 관광개발 컨설팅</li> <li>▪ 기업구조조정, 기업투자유치 자문</li> <li>▪ M&amp;A, IPO자문, 자산부채 실사, 주식평가</li> <li>▪ IFRS 전환 및 공시자료 검토</li> <li>▪ 재무 및 경영리스크 분석, 관리, 경영일반 자문</li> <li>▪ 경영계획 및 시뮬레이션 / BSP</li> <li>▪ 정보화계획/ ISP / IT Consulting</li> <li>▪ PI / CRM / Risk Management 등</li> </ul> |
| 문의처  | <p>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3층, 5~8층, 10층 (우편번호 06179)</p> <p>TEL: (02) 316-6646, FAX: (02) 775-5885, E-mail: <a href="mailto:secretary@crowe.kr">secretary@crowe.kr</a></p>  |
| 발행인  | 한울회계법인  |

\* \* \* \* \*

한울회계법인(Hanul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anul LLC is a member of Crowe Global, a Swiss veren. Each member firm of Crowe Global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Hanul LLC and its affiliates are not responsible or liable for any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member of Crowe Global and specifically disclaim any and all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Crowe Global member.*